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08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엄태영 · 주진우 · 안철수
김재섭 · 이만희 · 박덕흠
김상훈 · 윤한홍 · 이양수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1.·2. (생략)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④ (생략)	----- ----- -----. 1.·2. (현행과 같음) ② ----- ----- ----- -----<u>2030년 12월 31일</u>----- ----- ----- -----. ③·④ (현행과 같음)
---	--